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알팔파 KK179×J101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알팔파 KK179×J10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8-1호	2018. 1. 22.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6호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 설정하는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